

부산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단83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조영국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나. 각 지입계약

(1) 원고('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화물운송업에 종사해 왔다)는 1996. 7. 4.부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겸 지입회사인 피고 및 (주)C(사실상 피고와 사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별지 표와 같이 화물자동차(트랙터)에 관한 지입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다(별지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은 변동은 거쳐, 2016. 8. 12. 현재 순번 제4, 9, 10번의 각 트랙터에 관한 지입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 이하 각 트랙터를 등록번호의 끝 네자리 숫자로 약칭한다).

(2) 1차 송금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10. 10. 피고에게 영업용 번호판(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 대금으로 27,323,000원(이하 '이 사건 1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1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

원고는 2018. 8. 30. 피고 및 (주)C를 상대로 '4202 트랙터 및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이 법원 2018가단17781)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2018. 12. 11.자 조정기일에 '미지급 관리비 319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각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위 각 화물차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2차 송금

원고는 1차 소송 결과에 따라 위 화물차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고에게 잔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화물차들에 대하여 자가용 자동차로서 일반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별도로 매수하지 않고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할 수 없음을 알고, 2018. 12. 24. D을 통해 영업용 번호판 대금으로 1,500만원(이하 ‘이 사건 2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 7. 배우자 E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F을 설립한 후, 피고의 협조 하에, 관할 관청에 4202 트랙터에 관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19. 1. 9. 그 허가를 득하였다.

라. 추가 소송

(1) 2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

(가) 원고는 2019. 2. 21. 피고를 상대로 ‘4189 트랙터 및 트레일러 2대(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에 관한 각 지입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위 각 화물차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이 법원 2019가단2694)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8. 22.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 관리비 2,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각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2. 30. 4189 트랙터에 관하여 (차량번호 4 생략)로, 각 트레일러에 대하여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4189(차량번호 4 생략) 트랙터에 관하여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 3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

원고는 2019. 9. 10. 피고, G(주), (주)H을 상대로 ‘1009 트랙터 및 트레일러 5대(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번호 11 생략)에 관한 각 지입계약을 해지하므로,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법원 2019가단15638)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20. 2. 12. ‘미납 관리비 275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종결되었다.

(3)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의 반려

원고는 2020. 9. 14. 관할 창원시장에게 1009 트랙터에 관하여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창원시장은 2020. 9.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4189(차량번호 4 생략) 트랙터에 관하여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대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하여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이에 원고는 2020. 10. 21. I를 상대로 아래의 변경전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법원 2020가단14655)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21. 6. 9.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강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가) 종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금전 송금 당시 피고(I, D)로부터 ‘화물차 3대[4189 트랙터(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의 영업용 번호판 대금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비로 위 각 돈을 지급하면, 원고로 하여금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각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그 후 원고로 하여금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도록 협조해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변경된 주장

이 사건 1금전은 피고로부터 4189, 1009 트랙터들의 영업용 번호판(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1009 트랙터에 관한 개별화물운송사업 허가권을

취득하도록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4189 트랙터의 영업용 번호판 대금으로 이 사건 1금전을 지급받은 후 원고로 하여금 위 트랙터(등록번호 변경 후 (차량번호 4 생략))에 관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도록 협조하였고 달리 이 사건 1금전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2금전을 송금한 후, 피고의 협조 하에, 2019. 1. 9. 관할 관청으로부터 4202 트랙터에 관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사실, 원고가 2019. 12. 30. 4189 트랙터에 관하여 (차량번호 4 생략)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4189(차량번호 4 생략) 트랙터에 관하여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추가로 득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2004. 1. 20. 이전부터 유지되던 지입계약 관계의 해지를 전제로 신규 허가를 득하거나, 기존 허가권자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매수하여 허가를 득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189 트랙터는 원고가 2004. 1. 20. 이전부터 지입하고 있던 차량이 아니므로 허가권자인 피고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매수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② 그렇다면 이 사건 1금전은 4189 트랙터에 관한 영업용 번호판 대금이거나 적어도 위 금전 속에 4189 트랙터의 영업용 번호판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는 종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물론이고 이 사건 소송의 최초 주장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이미 피고의 협조 하에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통상 영업용 번호판의 시세가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1금전에 1009 트랙터에 관한 영업용 번호판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④ 달리 이 사건 1금전 속에 1009 트랙터의 영업용 번호판 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1금전을 1009 트랙터의 영업용 번호판(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 대금이나 위 트랙터에 관한 허가 취득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위 각 금전을 법률상 원인이 없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별지